

---

---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

---

김민욱

“장애인복지할인 적용해주세요.” “네, 몇 급인가요?” “급수는 폐지되었고, 장애 정도가 중증입니다.” 그렇다. 나는 건강한 몸을 물려주지 못한 장애인 자녀를 둔 아빠이다. 나는 아이와 함께 공원, 산, 바다 등을 이용할 때 주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한다. 그날도 나와 아이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공원에서 꽃, 나비 등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해가 저물면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주차장 요금 정산을 위해서 사전정산 기기로 갔다. 나는 안내에 따라 호출 버튼을 눌렀다. “장애인복지할인 적용해주세요.” 라고 말하자, 인터폰 속 직원은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어야만 적용되니까, 나갈 때 게이트 앞에서 다시 호출하세요.” 라고 말하고 인터폰을 끊었다.

차에 탑승 후 출구로 이동했다. 게이트에서 다시 호출 버튼을 누르자, 동일한 목소리의 직원은 인터폰을 통해서, “정산기에 복지카드를 올려놓고, 해당 장애인 얼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카메라 쪽으로 오세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몸이 불편한 아이를 어떻게 운전대 앞으로 데려오지? 지금 자고 있는데...’ 라는 생각만 머리에서 맴돌았다. 인터폰 속 직원은 계속 소리를 질렀다. “누군지 안 보이니까 운전석 쪽으로 오세요. 카메라로 운전자만 볼 수 있어요.” 라고만 말하고 있었다.

나는 너무 화가 났다. ‘우리 아이가 물건인가? 우리 아이가 애완동물인가?’ 시간이 조금 지나자 답답했는지 게이트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폰 속 직원이 조수석 쪽으로 다가왔다. “확인할 수 있도록 카메라 쪽으로 오라는데... 안 보여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라고 그 직원은 말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몸이 불편하고, 자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운전대 앞으로 데려오나요? 우리 아이가 애완동물입니까? 물건입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러한 일은 비단 공원 공영주차장에서 끝이 아니었다. 공항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을 때도 유사한 일을 겪게 되었다. 나는 정산소 직원에게 복지카드를 보여줬다. 직원은 받아든 복지카드를 복사한 후 사진기를 들고 내 차 앞으로 와서 번호판과 아이가 타고 있는 모습을 사진 찍기 시작했다. 나에

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사진을 찍고 유유히 정산소로 다시 돌아가는 직원을 보면서 너무 황당했다.

마치 내가 죄인이 되고 불법을 저질러서 사진 찍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아이가 나에게 물었다. “왜 사진 찍어?” 나는 장애인 복지할인 때문이라는 말이 턱밑까지 차올랐지만,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가 맞는 것 같다. 나는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장애인이지만,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누리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인권 관련 정부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1년이 지난 후 돌아온 답변서를 받아보고 나는 생각에 잠겼다. 답변서의 내용은 ‘공공기관에서 복지할인을 적용할 때 장애인 본인 탑승 여부 확인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과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이었다.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조건이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권 문제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법적 기준이 없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로만 끝난 부분이 나를 너무 허탈하게 만들었다. 나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배제되어도 된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머리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10조에 따른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지 못하고 행복을 침해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는 보장할 의무를 다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법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현장에 적용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요소가 없는지를 왜 먼저 고려하지 않았는지 아쉬울 뿐이었다.

오늘도 나는 ‘장애인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규칙으로 인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무너지는 경우를 없게 하겠다는 마음의 배리어프리(barrier-free)가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본다.